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 (2020. 6.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0-69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0년 5월 22일(금)
- 라. 회부일자: 2020년 5월 26일(화)

2. 제출사유

동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비용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안 제8조)
- 나. 선정대리인의 신청·통지 등(안 제9조)
- 다.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안 제10조)

4.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5. 참고사항

- 1) 입법예고: 2020. 4. 16. ~ 5. 6.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음
- 5) 2020년 제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5.12.)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0년 5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국세기본법」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당사자의 권리 구제 등을 위한 대리인 선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바, 「지방세기본법」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대리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이러한 개정 조항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동 조례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를 신설하였는바,
- 개정 조례안 제8조에서는 대리인 신청 요건으로 신청인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제9조에서는 선정 대리인 신청절차와 요건이 충족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해야 함을, 제10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개정 조례안을 살펴 본 바, 기본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안의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93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 (2020. 6.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0-70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0년 5월 22일(금)
- 라. 회부일자: 2020년 5월 26일(화)

2. 제출사유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이 일몰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감면제외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이 조례의 목적·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인용 법령 변경 (안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나. 중과세 부동산 감면 제외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16조)
- 다. 반복적 문구 지양 및 간소화 등.

4. 관련법령

- 가. 「지방특례제한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다. 「지방특례제한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5.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2020. 4. 23. ~ 5. 13.(제출된 의견 없음)
-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해당 없음
- 다.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라.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음
- 마. 제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 5. 19.)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0년 5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동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살펴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우리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안을 조별로 살펴보자면, ‘안 제2조, 제14조의 2,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 2’ 중에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안 제10조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법’으로 개정하여 동어 반복적 문구를 지양하는 등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있음.
- 또한, 안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이관하면서 문구를 상위법 용어대로 수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 제1호 및 제2호 역시 상위법의 조항에 호응하는 문구로 정비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정비 결과 감면 기간, 감면율 등은 기존 조례안과 동일하게 이관되어 개정되고 있음.
- 안 제16조(감면 제외대상)에서는 기존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부동산’으로

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감면 제외 대상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대상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위와 같이 개정 조례안을 살펴본 바, 동 조례의 근거법의 규정에 부응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며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 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조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가. 외국인투자기업
 -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 등
 -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 등

3.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 ⑦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 ⑨ 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7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 ⑩ 제7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⑪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할 세액의 범위 및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5.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⑭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7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및 조세감면결정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1. 15.]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 15.>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